

2020

컴퓨터 소셜 채팅 폭력

2020. 8. 27.(목) 10:00~16:00

천안신라스테이 3층 연회장

Digital Sexual Violence

OUT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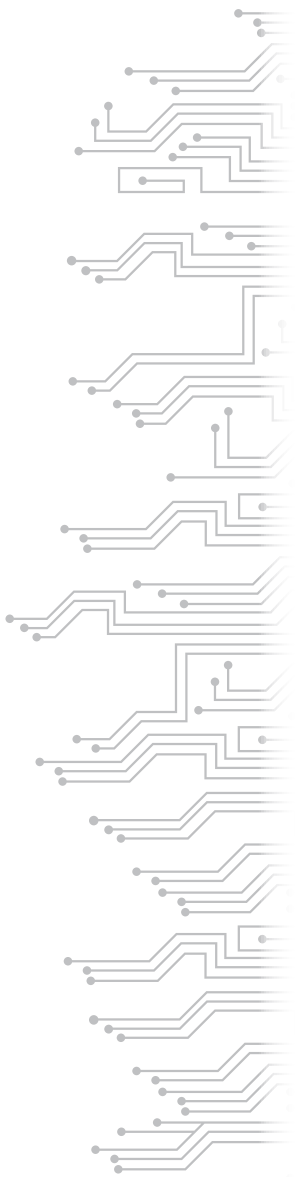
남녀 청소년 소수 2020 성폭력 예방

2020. 8. 27.(목) 10:00~16:00

천안신라스테이 3층 연회장

Digital Sexual Violence

OUT



| 재단법인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목 차



01. 개회사 박영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3
02. 축사 오인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5
03. 기조연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활동 방향	7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04. 토론 전문가	21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필요성	21
2.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보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24
3. ‘랜덤채팅 청소년 성착취 근절 방안 모색’ 에 대한 토론	28
4.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	34
부록. [관계부처 보도자료]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35



일정표



시 간		내 용	진행
1부 개회식 및 발족	10:00 ~ 10:30	접 수	
	10:30 ~ 10:50	내빈소개 및 개회사, 축사 등	개회사-원장 축사-오인환 원장 참석내빈
	10:50 ~ 11:0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원장
	11:00 ~ 12:00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정책기획실장
	12:00 ~ 13:30	점심식사	
2부 정책 포럼	13:30 ~ 14:00	2부 참석자 접수	정책기획팀
	14:00 ~ 14:30	기조강연-정미례 정책위원 ‘디지털 성 범죄 대응과 예방활동의 방향’	각 분야 전문가
	14:30 ~ 14:40	토론회 준비	
	14:40 ~ 15:40	<p>전문가토론</p> <p>▶ 좌장. 충남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p> <p>▶ 주제1. 디지털성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필요성 - 해바라기센터 이선화 부소장</p> <p>▶ 주제2.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보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 변호사 배수진</p> <p>▶ 주제3. ‘랜덤채팅 청소년 성 착취 근절 방안 모색’ 청소년보호위원회 역할 - 청소년보호위원장 권일남</p> <p>▶ 주제4.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모색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장 엄지혜</p>	
		15:40 ~ 15:50	
	15:50 ~ 16:00	정리발언 및 마무리	정책기획팀

《개회사》

충남청소년포럼의 첫걸음

박영의 (충남청소년진흥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청소년진흥원 원장 박영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충남청소년포럼’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코로나와 수해 등으로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도청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리고 충남의 청소년 기관·단체장님들, 충남청소년정책자문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기조발표를 맡으신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유래없던 집중 폭우 등의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기회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간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자 언택트라는 새로운 만남의 형태가 창출되고, 핸드폰과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청소년들의 내일을 준비해야 할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고, 우리 청소년들은 단순

보호대상이 아니라 시대의 동반자로서 지금-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과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오늘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을 만들어 보는 지속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충남청소년포럼’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인간의 성적 본능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성장에 힘을 실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새삼 인식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관점에서 어떠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지 또한 충남도내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고자하는 함께 바뀌어나가려는 실천적 노력은 성범죄 없는 일상을 위해 일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현장에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보호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다각적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인환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을 아우르는 정책허브 기관이자 37만 충남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대변인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순중] 여성가족정책관님, [한영신,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이를 반영합니다.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다든 것은 그들에게 비춰진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야할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전문가이신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마냥 미성숙한 존재,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유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면, 성실, 공동체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가 무너져가고 창의, 혁신,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배적 가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과거 100년이 걸렸던 변화를 1년 만에 이루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를 매일 몸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른의 고정된 시각으로 청소년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하는 가치관에 적합한 사회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현장의 전문가이신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적절히 녹여낸다면, 우리 37만 충남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위할 수 있는, 또 청소년들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의 출발은 작은 씨앗과도 같지만, 훗날 청소년들을 위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igital Sexual Violence



OUT

기조연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활동 방향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활동 방향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활동 방향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디지털 성범죄란?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
-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만나 확장되는 성폭력

- 성 착취물이 아닌 '야동', 희미한 불법성 인식
-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한 무한한 피해의 가능성
 - 디지털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도 자체의 품질 저하 없이 보존가능
- 피해자의 취약성 이용이 용이함
- 성차별적 성 의식 위에서 성립하는 범죄
- 범행 은폐의 기대가 높음
- 기술에 대한 이해가 처벌 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증거 수집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만나 확장되는 성폭력

- 불법 촬영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 비 동의 유포, 재 유포
 - 개인정보 노출,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 단톡방에 유포
- 유통, 공유/ 제 3자 유포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유포 협박
 -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만나 확장되는 성폭력

• 사진 합성 후 게시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일명 '지인 능욕' 딥 페이크 방식)

• 성적 괴롭힘 :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단톡방, 게임,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남

- 피해자를 문란한 여성으로 낙인 찍어 모욕하는 등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

- 성적 모욕글 게시, 허위사실유포, 피해자 사칭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

- '성폭력'이라는 인식 부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 발생공간 ▶ 1: 다수 ▶ 파생범죄 ▶ 불안피해 ▶ 2차 피해 ▶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 피해의 사소화

• 그루밍 범죄 대응 한계

• 법률적 한계(성폭력, 성매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부처도 각기 다름)

• 지속성과 연속성 : 피해 당사자에게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여성에 대한 폭력, 성매매 산업 강화

사례유형

- 일상성: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 “평상시 외모, 옷차림, 언행 하나 하나가 성적 으로 희화화”
 -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속으로는 동기 여학생들을 성적 욕망을 해소할 도구 정도로 취급해 온 가해자들의 행태가 무섭다” 고 호소
- 접근의 용이 : 네가 너 인걸 증명해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른 알몸사진과 합성해서 유폐하겠다. 아이템을 사려면 알림장 사진을 보내주면 문상,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함
- 해결사 역할 : 경찰인 척 하면서 신상정보가 떠돌아 다닌다 해킹 당한 것 같은데.. 내가 전문가야(변호사예요) 신고 당할 것 같은데 도와 줄께..
- 갑자기 계정이 해킹되었다면서, 링크를 누르자..

사례유형

- 오픈채팅방에 '수위 미션 성공하면 길콘(기프트콘), 문상(문화상품권), 길카(기프트카드) 등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들을 유인
- 워터마크를 넣어서 홍보용으로도 사용
- 일탈계, 벵방 bj, 스폰 알바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유인

머니투데이

합성 포르노 '딤페이크' 피해자 25%는 '한국 女연예인'

구간비 인턴 | 입력 2019.10.10. 13:58 | 댓글 640개

사례유형

HOME > 뉴스/자유TV

여가부, 중고생 10명 중 1명,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 경험

미성년 대상 대화사례(1,605명) 중, 성적 목적의 대화가 76.8%를 차지함

김민영 기자 | 승인 2020.06.15 18:28 / (19)

자판 | 트위터 | 페이스북

채팅앱 매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법 자료: 한국위성통신연구원 6월-2020년 2월 설문 기준

14세 미만 미성년자, A채팅앱에서 가해자 만남	가해자, 피해자 이름·나이·사는 곳 알아낸 뒤 B메신저로 옮겨 신체 사진 발송	유포 협박
14세 미만 미성년자, C채팅앱에서 가해자 만남	가해자, D메신저 통해 '주인님'이라 부르리며 신체 사진, 자위 영상 요구	직접 만나 유사 성행위 후 영상 유포
14세 미만 미성년자, E개입 채팅앱에서 가해자 만남	가해자, "은 주겠다"며 신체 사진 요구	사전으로 협박해 자위 영상 등 요구
		영상 유포 협박 및 금품 갈취

기사출처: 경향신문 2020.4. 2일자

온라인 그루밍

- UN은 1996년 스톡홀름에서 아동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를 열고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적 학대, 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성매매, 아동포르노 등을 성착취(sexual exploitation)로 개념화함
- 성행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장, 유혹·유인, 권유, 강요, 대화하는 행위를 통상 온라인 그루밍이라 함
- 영국 : 그루밍 이후 아동과의 만남, 온·오프라인 성적 대화 대상 처벌
- 호주 : 온라인 그루밍(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이나 성적 목적을 위하여 유인, 외설·음란 자료를 아동에게 노출하는 행위 처벌

온라인 그루밍

- 미국 : 온라인상 성적 목적으로 유인·권유·강요 행위를 성착취에 포함
 - 인터넷 루어링으로 처벌 : 아동에게 성매매 혹은 성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그루밍 행위
 -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
- 란사로테 협약 제23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에 대한 성적 제의가 반드시 직접 만남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가해자가 온라인상에만 머무를 수도 있음에도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 최근 경향은 비접촉 성착취 : 초기 단계에서 광고성 유인 메시지 송신 등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이후 개인의 성적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협박과 강요 등이 결합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

온라인 그루밍 대책 강구

-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 필요
-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인식
-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안전한 인터넷, 디지털 환경마련(혐오, 차별, 착취, 폭력에 대응)
- 영국 CEOP 호주 ESAFETY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사이버/디지털 성범죄 유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SNS와 스마트폰 앱이용
- 여가부 성매매실태 조사에 따르면(2019)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덤채팅은 총 399개다. 이 중 300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범죄가 발생해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판결문 : 2018년 기준 조건만남의 91.4%는 랜챗, 메신저, SNS 등. 2013년에는 26.7%였는데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함
- 성매매 알선 범죄 또한 89.5%가 랜챗, 메신저, SNS 등
- 성착취물 :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되는 촬영물 뿐만 아니라 협박, 강요, 온라인 그루밍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합성과 딥페이크 등 편집물이 포함
- 2019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 알선 등은 피해자의 연령 13세~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30초 캠페인 "타인의 성적이미지 공유는 불법이다"(2018)
©www.cybertip.ca

채팅앱 상 대화의 흐름

- '어디', '사진', '라인', '용돈'이 가장 대표적인 성 착취 가해자가 '용돈'을 주겠다고며 접근해 오는 것
 - 익명성보장, 추적 안된다, 캡처 기능 안됨. 폭파 장치 등
- 가해자들의 변명 : 본인이 원하듯이 피해자도 원한 것 : 다른 게시글을 보면서 당연시 여기면서 문제의식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 2014-2018 년 사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가 발생한 구체적 경로 분석한 결과, 메신저/SNS/스마트폰 앱을 통한 경우가 75.1%로 가장 많음
- 가해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도
- 채팅앱/어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촬영해 전송하라고 요구한 비율이 71.4%임.

<내용 출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익 몰수·신상공개 등 적극 추진 (2020.04.23. 정부대책발표 내용 중)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중대 성범죄는 예비·음모죄 신설
- 모의만 해도 처벌
- 범죄수익 환수 위해 기소·유죄판결과 별도 '독립몰수제' 도입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3)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찾아보는 것 자체가 범죄"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성 매수 대상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변경
-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지원-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절차 간소화
-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강화 : 발견 시 바로 삭제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법률 주요개정내용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5호).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1조).
- 라. 관련 규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제56조제1항).
-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 <법제처 제공>

법률 주요개정내용

-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방향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공간활용 현황 파악
- 온라인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젠더폭력 교육이 필요
 - 왜 젠더기반 폭력인가와 정보인권관련 교육 필요
- 가해자/피해자/주변인/조력자의 입장에서의 관점과 대응
- 산업화의 문제, 수요의 문제를 짚어 내기
- 수요에 대응하기 : 성 착취 산업 종식 왜 아동청소년/여성이 소비주체자로 나서게 되는가? 스스로 생산자라는 착시효과분석 필요 :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 착취 행위임을 확인시켜 줘야 함
-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안전한 온라인공간을 위한 개인,사회,기업,국가의 대응실천 만들기
 - 플랫폼, 사업자, 기업들에게 사회적 의무 부과

웹과 관련한 여성문제

웹이 여성과 소녀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 팀버너스리, '모두 위한 웹' 최우선과제

버너스리는 웹재단의 2020년 이후의 핵심목표를 온라인 성 불평등 해소라고 선언하고, 데이터와 피드백을 통해 각종 서비스 설계단계에서부터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양성평등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2020.3.15일자)

웹과 관련해 여성 문제를 우려하는 이유

1) 인터넷 이용에서 여성들은 충분한 접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웹 재단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평균 21% 인터넷 접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별 격차는 저개발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인터넷 접근권이 남성들에 비해 52%까지 떨어진다. 배경에는 웹을 이용하기에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과 기술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인터넷 접근의 성별 격차는 웹을 이용한 여성들의 학습, 경제활동, 권리 주장 등을 방해해 기존 불평등을 심화 시킴.

2) 온라인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범죄의 도구로 쓰인다.

- 온라인 여성 학대가 여성들을 일자리와 학교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자유스럽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만들고 고통을 안기고 있다. 웹재단과 걸스카우트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동의 없는 은밀한 사진 전송 등 성적 모욕과 위협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4%는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진다고 답변했다. 국내에서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도 유사한 사례임.

웹과 관련해 여성 문제를 우려하는 이유

3)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광범하게 활용되면서 기존의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아마존은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오다 여성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2018년 자체 폐기한 바 있음.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 1)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2) 피해자 욕구에 기반한 심리적 지지, 법적 지원, 피해구제 및 보상, 피해사실에 대한 공론화 절차 필요
- 3)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하고 성평등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강력한 실천활동 필요

외국의 사례

- ▶ 미국 : 응크리지 말고 당당하게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 (Speak Up & End Revenge Porn)
- ▶ 캐나다 : 지역사회·보호자·교사·부모 모두가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훈련받고 지지하는 것 (Be Smart, Strong & Safe), 디지털 성범죄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나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 (Have an Emergency?)
- ▶ 호주 : 여성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eSafety Women)

 여성가족부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 ✓ 나의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물리거나 전수하지 않습니다
-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나 문자를 클릭하지 않습니다
-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물 찍지, 보내지, 보지도 않습니다
- ✓ 타인의 사진, 영상물 공개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타인의 사진, 영상물 올리지 않고 뒤범벅하지 않습니다
-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물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 ✓ 형식, 부모, 함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kpcc.or.kr)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kpcc.or.kr)에 문의하십시오.

 여성가족부

우리 모두 약속해요. 안전한 온라인 세상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물리거나, 타인에게 전수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 불법촬영, 남용의 양도, 성적 이미지 전송 등 디지털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물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말려 줌을 당부합니다
-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생각이 아님을 알려주고 안심으로 지지해줍니다
- ✓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이버·가상세계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kpcc.or.kr)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kpcc.or.kr)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Digital Sexual Violence



OUT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필요성

이선화 (충남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증가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피해아동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청소년 가해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의 다각적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중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의 치유 회복을 위해 2010년 개소하여 활동하고 있는 충남지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2010년부터 현재(2020년 7월말 기준)까지 8,157명으로 성폭력은 6,281명, 가정폭력 921명, 성매매피해 75명, 기타 883명, 시설아동학대 146명이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상담 현황 10세 미만 903명, 10이상~12세 미만 673명, 13이상~19세 미만 1,562명, 3,138명으로 전체 상담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 최근 5년간(2016년1월~2020년7월) 성범죄 인원은 6,313명 중 19세미만 993명으로 44%, 19세~60세 미만 977명으로 43%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대한 성교육과 범죄 예방교육이 시행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시기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존재감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들이나 보건교사들이 요구한 것처럼 연령대가 훨씬 더 앞당겨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성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전 생애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하는 전인적인 교육으로 보아야 합니다. 폭력의 시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계를 넘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범죄나 사고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피해를 막고자 하는 자발적인 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성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 범죄와 성범죄 관련 위험요인들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둘째, 예방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관계, 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구조 전체를 다뤄야 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계나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재계, 노동계, 보건 의료 분야,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충남에 아쉽게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어떤 전략과 방법이 성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갖춰진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성교육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늘지만 성범죄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 성교육은 연령 별, 성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학년이 올라갈수록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를 통해서 성교육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먼저 성교육에 대한 방법론과 지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연애와 성폭력 예방교육의 수요가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성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교육방법을 넘어서 예방을 위해 모두가 같이 적극적인 참여,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넓은 의미의 실천적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5. 스마트 폰과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심리적 물리적 정서적 경계교육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7. 성교육, 성범죄예방교육은 성인지적 인권 교육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Digital Sexual Violence



OUT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보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보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배 수 진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를 정의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2개를 소개할 것이고 둘 다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락하게 되었고,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만나 여러 차례 간음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자 새벽에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자 여러 남성들로부터 쪽지를 받았고, 약 2개월에 걸쳐 연락을 받던 중 가장 무해하다고 생각한 대기업 훈남님의 연락을 수락하면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대기업 훈남님은 닉네임답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일반 성인이라고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소개하였고, 서로에 대한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화는 불편하

거나 남성들에게 요금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이동하자고 하였고, 그 곳에서 본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공 할테니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몸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바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결국 돈 말고 가방 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위행위에 응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 생각에 영상 통화는 서로 통화할 때만 보고 말 것이므로 자위행위를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카메라가 잠깐씩 꺼지면서 찰칵 소리가 들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통화를 마친 후 가해자에게 캡처한 것을 보고 싶다고 하자, 가해자가 어떻게 알았냐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눈치 채고 기지를 발휘하여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은밀한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유포할 것임을 표시하면서 “후회 하지 않으려면 말 잘 들어라” 고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유포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던 중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위 동영상을 유포한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깨닫고 피해자가 채집한 증거 동영상을 토대로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청소년의 음란물 배포 등) 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 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 만을 처벌하였으므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 법 규정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 하는 것, 직접 촬영

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자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고액을 받고 합의하였는데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피해자가 거의 성년에 가깝고 유포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가 설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호기심에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고, 역시 여러 남성들로부터 쪽지를 받았고 그 중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한 남성과 대화를 한 달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다정하게 고민을 들어주며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이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자 가해자는 자신이 결혼도 못하는 불쌍한 남성이고 앞으로도 결혼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 한달 가량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실제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그 전에는 거절하였는데 한달 가량 대화를 나눈 이후 이제는 만나도 되겠다는 안심이 들었고 피해자를 만난 가해자가 “초딩을 따 먹는 게 소원” 이었다는 말을 하며 성관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있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에 응하였고, 유사 성행위도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랑한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러한 피해 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초등학생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간음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 강간 행위가 여러 개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면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선고형은 2년 6월형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이 화근이 되었고,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손상에 비해 실제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양상을 보면 가해자를 대하는 관점이 유순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유를 위한 일인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접하게 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경험이 성인과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인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를 통제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성인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별하여야 하고, 성인보다 청소년이 그런 자극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청소년의 자유가 다소 제한받는다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과의 대화를 제한하고, 유해한 제안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즉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가 커지도록 손쓰지 못하는 것 역시 청소년이기에 가능한 대책, 자기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청소년이 아무 거리낌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Digital Sexual Violence



OUT

'랜덤채팅 청소년 성착취 근절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랜덤채팅 청소년 성착취 근절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

권일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장)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랜덤채팅으로 인한 청소년성범죄피해사건이 수면위로 급상승하였음에 따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진 것을 잘 알고 있다. 이후 각종 텔레그램방을 통한 다양한 채팅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전이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청소년보호의 자정적 기능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도 깨닫게 되었다.

랜덤채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대화창을 통하여 누군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얻으려 하면서 상대방과의 만남이 불특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수단의 특성상 불특정 대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갖는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랜덤채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성범죄의 시발점으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중 14%가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1순위로 채팅사이트를 꼽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점차 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나 조건만남이라는 행위가 어려워지면서 익명성을 전제로 한 성범죄행위의 간편성이 서로에게 맞

아떨어져 이러한 채팅사이트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N번방 사건이 부각되지 않았다면 랜덤채팅의 사회적 해악을 규제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는 시도 역시 매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간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각하고 랜덤채팅의 불법적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강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정보통신사업자,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이용자, 그리고 국가간 분쟁발생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웠었다.

랜덤채팅의 문제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룸으로써 채팅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알고서도 대응이 어려웠던 점은 그간 랜덤채팅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상 어떠한 규제를 명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는 안전한 채팅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함으로써 청소년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0-112호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였다.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

□ 추진배경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
적 대상화·착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 VIP,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 엄벌, 아
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리,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 지시(3.23)
- IT기술 발달에 따른 익명성이 있는 통신매체(랜덤 채팅앱 등)로
아동·청소년을 유인·성 착취 범죄수단으로 악용하고, 성 착취
사안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 지정 필요성

- (사적 대화 내용 심의 불가능) 랜덤 채팅앱 사업자는 이용자 간
대화 플랫폼만 제공하며, 이용자 간의 대화내용은 제3자의 열람

이 불가한 사적 통신 영역(게시판 등 공개화면만 심의)

- (사후 심의의 예방효과 미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별 유해매체물 유통 게시 후 진행되는 사후 심의의 특성 상 사전적 범죄예방 효과 미미
 - 심의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절차 진행시 사업자가 앱 삭제 후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 하는 경우 정책(심의) 효과 저하
- (자율규제의 한계) 앱 플랫폼 사업자(구글, 애플, 윈스토어)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또한 다양한 다운로드 경로가 존재하여 실효성에 한계

따라서, 매체물 각각을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게 될 경우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필요(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항)가 있음을 근거로 유해매체를 지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랜덤채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감행함으로써 본 고시의 지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청소년보호법 제7조5항)

1.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주요 의미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대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조치 유도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불건전 만남 등 유인 시 이에 대한 증거수집·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행위자의 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력 제고 및 이를 통한 예방 차단 효과를 도모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틈새는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랜덤채팅방과 유사한 오픈채팅방은 여전히 유해매체물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의 정보체계의 발전속도는 비약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날마다 새롭고 신종유해업종이 생겨나기도 하며 또 이름을 바꿔달기도 하여 눈속임을 이루고 있다.

모든 사안을 법과 제도로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법과 제도를 강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신종유해업종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1차적 목표이기는 하나 동시에 사회적 보장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바로 청소년기관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 먼저 청소년유해매체나 각종 채팅방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및 범법 행위를 하는 곳을 발굴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감시의 눈길이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용자의 시각을 올바르게 판별하도록 하는 교육과 판단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아마도 날로 신종유해업종의 변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강화에 힘을 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 및 인식개선도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Digital Sexual Violence



OUT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

- 사례를 중심으로 -

염지혜 (천안자립지원관 관장)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일당이 검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과 유통으로 그 모양과 형태만 달라졌을 뿐 범죄의 수법은 더 은밀해지고 교묘해지며 가학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자기기의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에 대한 변화가 급격히 성장하는 환경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율 또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성범죄라는 것을 신체적 접촉이 있거나 강제성이 더해져 폭력과 같은 행위로만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호기심과 연관 지어 가볍게 여기거나 범행을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의 태도, 직접적인 성폭력은 없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활동이 중요한 것은 피해 대상뿐 아니라 가해 대상이 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에서도 구속기소된 피의자 중 몇 명은 18~19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핸드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성 가치관의 인식이 바르게 자리 잡지 않으면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포럼에서 기초연설을 해주신 정미례 자문위원님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며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 대책에 대해 고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의 확대 및 방임 등으로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위기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24시간 365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천안(2개소), 아산(2개소), 공주(2개소), 홍성(2개소)에 총 8개의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천안 1개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2002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매년 150여명의 여자청소년을 보호하며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상당수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 피해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 성매매 실태조사_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이 메신저나 SNS, 인터넷 게임을 통한 성적 유인 경로 비율이 70.2%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인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였습니다.

위기청소년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이 47.6%, 가출 이후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이 77.3%로 나타났습니다.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는 채팅앱(46.2%), 랜덤채팅앱(33.3%), 채팅 사이트(7.7%) 등 온라인 비율이 87.2%로, '16년 조사(74.8%)에 비해 12.4%p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가출이라는 위기상황과 함께 성범죄에도 노출되는 청소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개별적 욕구에 맞춘 개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쉼터라는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경험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상황이나 욕구에 맞는 성교육(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쉼터에서는 주 1회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총 4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새롭게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매분기에는 지역 내 성문화센터 및 외부 강사를 연계하여 교육하고 있지만, 그 효과나 기대는 낮은 편입니다.

사례 1) A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으로 계모와의 불화로 인해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입소 당시 계모가 용돈도 주지 않으며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지원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지만 지나친 과소비, 유흥에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성교육 당시 쉼터 실무자를 당황하게 할 만큼 성행위 묘사나 성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핸드폰으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에 대해 다른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례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인터넷 채팅을 시작했는데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게 되어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 청소년과 같이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쉼터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성문화센터, 외부 성교육 포함)보다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 디지털 성범죄,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호기심에 시작한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피해신고방법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충남에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쉼터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지만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제공에만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위기청소년 중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피해는 돈을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임신이나 성병, 감금, 구타 등과 같은 위험요소보다 돈을 적게 받는 것을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피해에 대해 신고한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은 자신들 역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또한,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에는 피해 청소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청소년도 있습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페이스 북이나 개인 SNS를 통해 고액 알바, 미션 성공 시 사례금 등의 문구를 올리거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개인 통장에 찍힌 금액을 캡처해서 올리는 행동을 통해 성범죄에 다른 청소년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들 스스로 범죄의 중심이 되어 행동하기보다 알고 지내는 형이나 언니, 성인들로부터 이용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바라보는 가해 청소년은 또 다른 피해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어린 청소년들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인들의 도구가 되어 착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2) B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가출하여 16세에 천안여자단기청소년 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입소 당시 친부모와는 연락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연락처나 집 주소(이사)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가출하여 밖에서 생활한 지 2년이 넘었고 타 도시에 있을 때 혼자 원룸에서 지냈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음에도 월세 및 생활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쉼터에서 지낼 때도 외출은 자주 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으로 통화나 연락은 수시로 하였습니다. 가끔 외출하면 명품운동화나 화장품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열골 및 목에 멍이 들어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 성관계 후 약속했던 돈보다 적은 돈을 받은 B가 남성에게 욕을 하자 구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해당 남성의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사이트에서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례3) C는 다른 지역 쉼터에서 천안여자단기 청소년쉼터로 연계되어 입소하였습니다. 타 쉼터에서 쉼터 기물을 파손하고 실무자를 위협하여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연계되었습니다. 초기상담 시 성매매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실무자는 외출 및 외박을 일정기간 제한하였습니다. 하루는 핸드폰을 들고 매우 불안해하며 무조건 퇴소하겠다고 하여 상담하니 채팅에서 연락된 남성이 쉼터 앞까지 찾아와 집요하게 연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는 남성에게 현재 외출할 수도 없고 외박도 안된다고 말하자 5분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쉼터로 찾아가 C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남성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를 알 수가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합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채팅앱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본인인증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채팅앱의 대화 사례 중 상당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대화이며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성적인 언급을 직접 하지 않지만 유도하는 성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청소년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심리·정서적 문제일 경우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지만, 성범죄와 관련한 상담은 보호자로서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가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기관 역시 성범죄와 관련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지만 피해청소년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거나 성병에 걸리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하면 쉼터라는 공간을 제공하면 되지만 가해자를 찾는 일이나 채팅앱을 막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 대상이 청소년인 현실점에서 피해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가해

청소년으로 분류되나 이전에는 피해 청소년이었고 이후 피해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원체계는 연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호, 수사, 의료, 법률지원 등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관계부처를 통해 심의·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피해자의 지원 내실화 등이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려면 관련 법안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련 부처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법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대상자 중심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대상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중심 즉 성 착취 피해자를 기반으로 하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우리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어린 너희들이 뭘 알겠어’ 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19 성매매 실태조사_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35.5%),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22.6%), 처벌이 두려워서(19.4)였습니다.

하지만 도움 요청 대상으로 상담 기관과 쉼터가 47.1%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많은 청소년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도 청소년쉼터와 같은 안전한

공간이 있어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을 발판으로 충청남도 지역 안에 청소년 성 착취가 근절되고 피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Digital Sexual Violence



OUT

**[관계부처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부 록]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 도 자 료	(배포) 2020.4.23(목)	
4월 23일(목) 12:00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석간사용 가능				
비고	# 공동배포: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브리핑 : 4.23(목) 12:00,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담당	<총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법무담당관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여가부 권익지원과 방통위 인터넷윤리팀 대검찰청 형사2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이한형, 서기관 이진희, 사무관 김현정 (044-200-2325, 2332, 2327) 서기관 나현주, 사무관 강정훈, 서우성 (044-203-7112, 7115, 7111) 과장 신대식, 사무관 김소완 (044-202-6150, 6155) 총괄팀장 진재선, 검사 송인호 (02-2110-3906) 과장 박순향, 대령 박용석 (02-748-5170, 6810) 과장 이정민, 사무관 구은정 (02-2100-4058, 4061) 과장 유정미, 서기관 신경식, 주무관 은가연 (02-2100-6391, 6392, 6429) 팀장 김영주, 사무관 정세민, 사무관 강윤진 (02-2110-1560, 1566, 1549) 과장 공봉숙 (02-535-5748) 과장 최종상, 계장 이명원 (02-3150-1605, 0235)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 오늘(4.23) 오전, 정세균국무총리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성범죄방지대책 마련·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 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 : ①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

<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

	기존 대책이 대응한 범죄 상황	최근 범죄양상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	(단순 촬영물) · 변형카메라를 매개로 한 <u>불법영상</u>	(다양화) +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 강요 등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 · 제공한 <u>성착취물</u>
유통매체	(공개적) ·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 공개적 유포, 불 특정 다수에 확산	(폐쇄적) · 해외 서버 기반 <u>폐쇄적 SNS</u> 활용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빠르게 이동
가해자	(개인 범죄) · <u>개인</u> 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 위주	(조직화) · 제작, 자금전달, 운영 등 <u>역할분담</u> · 가입자(유료회원), <u>가상화폐</u> 등 활용 통 해 대규모 범죄수익 창출
피해자	(피해자 불특정) ·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에서 불법촬영에 노출	(피해자 특정, 피해수준 심화) · 특정 피해자 대상 협박, 강요, 지속적 성착취

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 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 지대 해소 ④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 자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 (중대성 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기준 마련)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검찰의 경우 지난 4월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그루밍처벌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 - 유포협박 - 만남요구 - 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외국 의제강간 기준연령 : 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州마다 상이(16~18세)

○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 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 현재도 마약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③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지원) 온라인상 유포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기능강화〉

	(현행)	(개선)
신고	• 전화 또는 온라인 중심	• 챗봇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 강화
삭제지원	• 신고 피해영상물 중심으로 삭제 지원	•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지원	•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 피해자 중심의 심층 심리 상담, 외상 후 치료 및 종합 사례관리 지원
총괄관리	-	• 연구분석/예방교육/DB·통계관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24시간 소요)

○ 또한, 「예측-유포차단-검거-삭제」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 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

	기존	개선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 웹하드사업자만 대상	· 전 인터넷 사업자 대상 (웹하드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삭제 대상	· 불법촬영물에 한정	·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재수단	·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 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내로 단축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되었던 사회복지부 요원의 행정기관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붙임 대책마련 전후 비교

구 분	기 준	개 선
대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켓형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처벌기준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美 10년이하 vs. 韓 1년 이하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 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 폭 강화
형집행 (수사 및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구형 선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으로 사전적발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수사
아동·청소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구제의 공백 발생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을 법률에 '피해자'로 명시하여 보호대상임을 명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16세 미만)보호강화
처벌사각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범죄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 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범죄수익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 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 시 수익 환수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 추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 및 범죄 의욕차단
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 後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3개월→3주)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20 충남청소년포럼

Digital Sexual Violence
OUT



| 재 단 법 인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